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'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명칭을 "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" 로 변경

나.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공급규정을 신설함

다.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함.(91개 항목)

라.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변경

- ㅇ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연녹색으로 함.
- ㅇ 3ℓ, 5ℓ용 음식물 전용 및 30ℓ용 공공용 쓰레기 봉투 신설

마.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

- ㅇ 과태료 부과 금액에 50%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위반행위별로 차등화.
- ㅇ 신고 유효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입법예고 결과

- ㅇ 예고기간 : 2003. 10. 6 ~ 10. 25(20일간)
- ㅇ 예고방법 : 성주군홈페이지 게재, 성주군공보 게재,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재
- ㅇ 결 과 : 제출의견 없음

6. 참고사항 :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지침(환경부)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?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?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?징수에관한조례"를 "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"로 한다.

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⑤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9조(쓰레기봉투의 종류?재질 등)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,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, 공공용봉투,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, 일반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,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생활쓰레기를,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이물질이 없는 음식물찌꺼기만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.
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수지 및 탄산칼슘 30% 이상 함유된 재질로 투명 또는 불투명하게 제작하며, 봉투의 색깔은 가연성 봉투는 주황색, 불연성 봉투는 흰색,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,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.
③쓰레기봉투의 용량, 크기, 두께, 규격기준은 별표3 및 별표3의2와 같다.

제12조제1항제1목중 "연탄재"를 "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"로 한다.

제12조제2항중 "위생장비에"를 "청소장비에"로, "위생처리시설에"를 "폐기물처리시설에"로 한다.

제19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①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9에 의한 포상금을 예산

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 유효기간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

별표1의 "대형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" 를 붙임(별표 1)의 내용으로 변경한다
별표3의 "쓰레기 봉투의 용량?크기 및 두께" 를 붙임(별표 3)의 내용으로 변경한다.
별표7의 "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처리 수수료" 를 붙임(별표 7)의 내용으로 변경한다.
별표3의2 및 별표9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1〕

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

(단위: 원)

품 명	규 격	수수료	품 명	규 격	수수료	품 명	규 격	수수료
가스레인지	모든 규격	2,000	세 탁 기	모든 규격	4,000	전 기 밥솥	모든 규격	2,000
가스레이지대	모든 규격	2,000	쇼 파	3인 이상	5,000	전기스토브	모든 규격	2,000
가스 오 븐	높이1m미만	2,000		2인 이하	2,000	전자레인지	모든 규격	2,000
레 인 지	높이1m이상	4,000	수 도 호 수	10 m 당	2,000	전 자 올겐	모든 규격	4,000
가 습 기	모든 규격	2,000	식탁 (테이블)	6인용미만	4,000	전 화 기	모든 규격	1,000
공기청정기	모든 규격	2,000		6인용이상	5,000	청 소 기	모든 규격	2,000
교 자 상	모든 규격	2,000	신 발 장	모든 규격	2,000	책 꽂 이	모든 규격	2,000
나무 묶음	직경 40cm	2,000	쌀 통	모든 규격	2,000	책 상	양수 책상	7,000
냉 장 고	500ℓ이상	8,000	쌍 크 대	60cm1짝당	3,000		편수 책상	4,000
	300ℓ이상	6,000	액 자	소 형	1,000	침대매트리스	1 인 용	10,000
	300ℓ미만	4,000		대 형	2,000		2 인 용	15,000
녹즙기 (믹서기)	모든 규격	2,000	어 항	1 m 미만	3,000	침대받침대	1 인 용	5,000
다 림이 판	모든 규격	1,000		1 m 이상	5,000		2 인 용	8,000
문 갑	모든 규격	3,000	에 어 컨	66㎡ 미만	3,000	화일캐비넷	4단 이상	3,000
물탱크 (저수조)	1 톤 용량	5,000		66㎡ 이상	5,000		3단 이하	2,000
배 기후 드	모든 규격	2,000		254㎡이상	8,000	캐 비 넷	모든 규격	4,000
벽 시 계	소 형	2,000	오 디 오	소 형	3,000	컴퓨터본체	모든 규격	4,000
	중 형	3,000		대 형	5,000	컴퓨터모니터	모든 규격	3,000
	대 형	5,000	오디오장식장	모든 규격	3,000	컴퓨터키보드	모든 규격	1,000
변 기	좌변기 (소형)	5,000	옷 걸 이	모든 규격	1,000	탈 수 기	모든 규격	2,000
	양 변 기	10,000	욕 조	모든 규격	5,000	텔 레 비전	19인치 미만	3,000
보 일 러	20평 미만	3,000	유리 (거울)	1 ㎡ 당	2,000		19인치 이상	5,000
	20평 이상	5,000	유 모 차	모든 규격	2,000	텔레비전대	모든 규격	3,000
보일러 겨름탱크	모든 규격	2,000	이불 (담요)	장 당	2,000	프린 터기	소 형	2,000
보 행 기	모든 규격	2,000	의 자	모든 규격	2,000		대 형	3,000
복 사 기	모든 규격	10,000	자 전 거	모든 규격	2,000	피 아 노	모든 규격	15,000
비 디 오	모든 규격	2,000	장 농	120cm이상1쪽	15,000	올 겐	모든 규격	4,000
비키니옷장	모든 규격	2,000		120cm미만1쪽	10,000	항 아 리	모든 규격	2,000
서 랍 장	5단 미만	2,000	장 식 장	모든 규격	4,000	화 장 대	모든 규격	3,000
	5단 이상	4,000	장 판	5 m 당	2,000	화 분	소 형	1,000
선 풍 기	모든 규격	2,000	전 기 담 요	3인용기준	2,000		대 형	2,000

(주)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.

〔별표 3〕

쓰레기 봉투의 용량·크기 및 두께

구 분	봉투용량 (ℓ)	봉투규격 (나비 ×높이, cm)	묶는선폭 (cm)	묶는선 길이(cm)	호칭두께 (mm)
음식물전용	3	39.5×22	5	9	0.025
음식물전용	5	46.5×26	6	10	0.025
일반용	10	56.5×33	7	12	0.025
일반용	20	69.5×42	8	15	0.030
일반용 공공용	30	78.5×48	10	17	0.035
일반용 공공용	50	91.5×56	12	19	0.040
일반용	75	103.5×65	14	21	0.045
일반용 공공용	100	113.5×71	15	23	0.050

〔별표3의2〕

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(제9조제3항관련)

용량	높이(cm)	나비(cm)	담는선까지 길이(cm)	묶는선 폭(cm)	묶는선 길이(cm)	속잡이끈 폭(cm)
10ℓ	53.5	36(24+6×2)	16.5	7	12	5
20ℓ	65.3	45(31+7×2	19.3	8	15	6

※ 재사용 봉투의 나비는 접합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($b = b_1 + 2b_2$)로 하고 b_1 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, b_2 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이다.

※ 높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0 ~ 4 % 임

※ 담는선까지 길이, 묶는선폭, 묶는선길이, 손잡이끈 폭의 허용오차는 -10% ~ +10% 임

〔별표7〕

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처리 수수료

(단위 : 원)

부 과 대 상	부 과 단 위	수수료
○깨진 유리, 병등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○이사·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가정 및 사업장생활 폐기물	60kg 포대당	2,500
○ 화훼농가, 음식점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	톤 당	15,000

〔별표9〕

위반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

부 과 대 상	부과금액	포상금액
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장소·설비 또는 허가·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 또는 매립한 자		
가.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(담배꽁초, 휴지 등)을 버리는 행위	5만원	1만원
나. 간이보관기구(비닐봉지, 천보자기 등)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	10~20만원	3만원
다.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	10~20만원	3만원
라. 공원,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	10~20만원	3만원
마. 차량,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	20~50만원	과태료부과금액의50%
바. 건축폐재류 등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(사업장 지정폐기물 제외)	50~100만원	

※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·징수에관한조례	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
제7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)	제7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)
①~④(생략)	①~④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⑤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.
제9조(쓰레기봉투의 종류·재질 등)	제9조(쓰레기봉투의 종류·재질 등)
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, 일반용 봉투는 가연성 봉투와 불연성 봉투로 구분하고, 가연성 봉투에는 가연성 쓰레기, 불연성 봉투에는 불연성 생활쓰레기를,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.	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,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, 공공용봉투,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, 일반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,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생활쓰레기를,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이물질이 없는 음식물찌꺼기만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.
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불투명하게 제작하며, 봉투의 색깔은 가연성 봉투는 주황색, 불연성 봉투는 흰색,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.	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수지 및 탄산칼슘 30%이상 함유된 재질로 투명 또는 불투명하게 제작하며, 봉투의 색깔은 가연성 봉투는 주황색, 불연성 봉투는 흰색, 공공용 봉투는 엷은청색,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
③쓰레기봉투의 크기·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.	③쓰레기봉투의 용량, 크기, 두께, 규격기준은 별표 3 및 별표3의2와 같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에 관한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의 부과·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 1. **연탄재**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. 2. (생략) 3. (생략)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, 별표 8과 같이 한다. 이 경우 폐기물수집·운반·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**위생장비에** 의하여 수집·운반되고 **위생처리시설에** 반입·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. ③(생략)	제12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부과·징수)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1. **가정에서발생된 연탄재**---------- ---------- .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**청소장비에**----------**폐기물처리시설에**---------- -------- ③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신고 포상금 지급) ①**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%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** ②(생략)	제19조의2(신고포상금지급)①**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대하여 별표9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 유효기간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** ②(현행과 같음)